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87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수의 난임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 개정 사항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